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0000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공포 2021.8.10. 시행 2022.8.11.)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교육과정,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수교육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 1)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1조)

2) ‘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안 6조)

3) ‘사전교육과목’을 ‘교육과목’으로 구분(안 10조)

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안 제3조)

다. 교육신청자 자격요건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구분(안 제4조)

라. 연수교육의 신청방법 규정(안 제5조, 별지 제6호서식 신설)

마. 연수교육의 표준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규정(안 제6조, 별표 1, 2호 신설, 안 제9조)

바. 연수교육 도입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 및 현업종사자 업무누수 방지 등 효율적 교육 운영을 위해 집합교육 원칙 규제를 개선하여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1)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온라인교육 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수강인원도 교육수요 급증 등 필요시 별도의 교육장소와 수용 가능한 수강인원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사실상 집합교육이 불가능 할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연수교육 수료자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해 수료증 및 수료증 발급 대장과 수료자 명단 통보 서식 신설(안 제14조, 15조, 별지 서식 제 7호, 제8호, 제9호)

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 설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
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445, 3435(팩스 044-201-5661)
- 이메일 : sohee012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